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5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2
※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9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10
3.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교육서비스업(P) 분류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4.
3. 회부연월일 : 2025.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보습학원 등 일반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Ⅲ. 검토의견

1.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4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② (현행과 같음)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④ ~ ⑥ (생략)	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u>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 및 상인조직이 등록 제한업종¹⁾(참고자료 1)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²⁾(참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

고자료 2)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임.

시행령 개정 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40종이었으나, 이 중 12종에 대하여 등록 제한을 해제한 결과 29종³⁾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⁴⁾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기존에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골프장·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는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9조의16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이란 신청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167,134원 이하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

1.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2.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3.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3)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제11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보험 및 연금업'이 '보험업'과 '연금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최종 제한업종 수는 29종임.

4)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도 제공", 2024.9.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완화

가맹점 등록 완화 업종	해당 점포
교육서비스업 (입시학원 제외)	음악학원, 미술학원, 외국어학원, 직업 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태권도 학원 등
보건업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일반 의원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 회계사
수의업	동물병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홍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 서비스, 지문조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골프연습장 제외), 독립 골프장 운영(숙박시설 미보유)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방 운영, 동전노래방 운영, 노래연습장 운영(주점 제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철학관, 역리원, 역술원, 점술서비스 등
모피 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등)	가죽, 의복 도매업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판매권이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 전자담배 판매점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타 교육기관(856)’에 해당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이 완화된 반면, ‘일반 교습학원(855)’에 해당하는 ‘일반 교과학원(85501)’(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등)⁵⁾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참고자료 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5)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교과학원(85501)’은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함(예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 예·체능 입시 전문학원).

점 등록 제한이 해제된 업종은 전통시장 등과 동일한 상권에서 영업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되어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던 업종으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완화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의 조치임.⁶⁾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완화 조치에 따른 신규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제도적 혜택이 보건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⁷⁾이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⁸⁾이 아닌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입시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

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정정 요청자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종을 확대한 취지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4.9.1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정정 요청자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위해 발행됩니다”, 2024.10.24.

7) 경향신문,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 서울·경기에만 ‘혜택’ 집중”, 2024.10.23.

오세희의원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차별상품권’으로 전략?”, 2024.10.21.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하면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대한 지원, 사교육에 대한 상품권의 집중 현상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제외할 경우 학원으로의 상품권 유통 현상이 발생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⁹⁾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바, 학원이 아닌 전통시장·상점가 등 골목상권 내 다양한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소비 선택을 유도하여 취약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특정 업종에 관해서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업종별 예외 허용이 필요할 경우 시

9) 지역사랑상품권의 학원 유통 현상 관련 기사

-서울경제, “골목상권 아닌 학원비로 쓰린 지역화폐…정부·지자체 부담만 키워”, 2024.9.5.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6BFR6VM>)

-중앙일보, “내수 살리자는 지역화폐, 41%가 학원비로 썼다…김해시 보니”, 2025.2.3.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153>)

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	연금업
855	일반교습학원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교육서비스업 (85)			
	초등 교육기관 (851)		
		유아교육기관(8511)	
			유아 교육기관(85110)
		초등학교(8512)	
			초등학교(85120)
	중등 교육기관 (852)		
		일반 중등 교육기관(8521)	
			중학교(85211)
			일반 고등학교(85212)
		특성화 고등학교(8522)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85221)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85229)
	고등 교육기관 (853)		
		고등 교육기관(8530)	
			전문대학(85301)
			대학교(85302)
			대학원(8530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특수학교(8541)	
			특수학교(85410)
		외국인학교(8542)	
			외국인학교(85420)
		대안학교(8543)	
			대안학교(85430)
	일반 교습학원 (855)		
		일반 교습학원(8550)	
			일반 교과학원(85501)
			방문 교육학원(85502)
			온라인 교육학원(85503)
	기타 교육기관 (85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856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1)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14)
예술학원(8562)		
		음악학원(85621)
		미술학원(85622)
		기타 예술학원(85629)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8563)		
		외국어학원(85631)
		기타 교습학원(85632)
사회교육시설(8564)		
		사회교육시설(85640)
직원 훈련기관(8565)		
		직원 훈련기관(85650)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6)		
		운전학원(85661)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8569)		
		컴퓨터 학원(8569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0)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